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에서 의결된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정신건강 검진 및 상담 지원에 관한
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

2016년 5월 4일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정신건강 검진 및 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위험 요인의 조기 발견 및 치료를 도모하기 위해 정신건강 검진 및 상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신건강 검진 및 상담(이하 "정신건강검진"이라 한다)이란 구민을 대상으로 우울증 등 정신건강 위험 요인의 조기발견을 위해 검진기관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 및 상담을 말한다.

제3조(구청장의 책무)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은 구민의 정신건강 검진 및 상담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·시행하고, 정신건강검진을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정신건강검진의 사업방향,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
2. 지원대상의 지원내용과 관련된 성별 통계 현황
3. 그 밖에 정신건강검진 운영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

제4조(검진기관의 지정) ① 구청장은 정신건강검진을 위한 검진기관(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중 정신건강검진을 위해 참여하는 정신의료기관을 말한다)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지정계획을 서대문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검진기관 지정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신청한 정신의료기관이 정신건강검진을 위한 의료기관으로 적합한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검진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.

제5조(지원대상) 정신건강검진 지원대상은 구민 중 본인이 건강검진 및 상담을 동의한 사람으로 하고, 그 밖에 세부기준은 매년 구청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정한다.

제6조(지원내용) 구청장은 정신건강검진에 대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검진비 (정신건강검진을 위해 정신건강 검진 및 상담 등의 진료행위에 대한 지원비를 말한다)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7조(검진비의 청구 및 지급) ① 정신건강검진을 실시한 검진기관이 검진비를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검진비 청구서 및 청구내역서를 매월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검진기관명,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
2. 지원 대상자 성명, 성별, 생년월일, 주소, 진료내역
3. 검진비
4. 그 밖에 필요한 사항

② 구청장은 검진비가 청구되면 검진내역 등을 검토하여 검진비용을 검진기관에 지급한다.

제8조(지역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 등) ① 구청장은 정신건강검진 지원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협의체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1. 사업추진을 위한 전략 및 추진계획에 대한 사항
 2. 정신건강검진 지원절차 및 지원범위
 3. 검진기관 지원 및 모니터링
 4. 검진기관의 거짓청구 등에 따른 조치
 5.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건강검진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
- ② 제1항에 따른 지역협의체는 「정신보건법」 제2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가 대신하여 운영한다.

제9조(환수조치 등) ① 구청장은 검진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검진기관으로부터 검진비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.

1.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정신건강검진 등의 의료지원을 제공하고 검진비를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

2.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검진비를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

② 제1항에 따라 검진비를 반환해야 할 검진기관이 정해진 기간 내에 검진비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「지방세기본법」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.

③ 검진기관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검진비를 지급받은 경우 구청장은 제4조에도 불구하고 검진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